

- 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 - 가.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
 - 나. 금융위원회 감사규정
 - 다. 금융투자업규정

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(2019/10/4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시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하여 감사인 지정과 관련한 회사 부담을 완화하고, 결산월을 변경하는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제도 정비(제15조 제5항 제4호)
 - 회사가 속하는 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(외감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 중 회사가 속한군 이상의 회계법인에 한함)에 대한 재지정 요청을 허용
- 감사인 지정시 결산월을 변경하는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 명확화(제14조 제8항 제4호 나목, 제14조 제9항, 별표 3, 별표 4)
 -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될 경우,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

나.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(2019/10/4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개선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신설하고, 금융위원회의 자체 감사 근거법령 제·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 -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된 「적극행정 추진방안」 발표(2019.3.14,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)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2019.5.14, 감사원)을 반영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2) 주요 내용

□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(제19조)

- 자체감사 면책기준 간소화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토록 요건을 완화
 -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면서 ‘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’ 면책할 수 있도록 면책기준 완화
 -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이행을 적극행정 면책기준으로 적용
 -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각종 매뉴얼 등의 내부지침을 자체감사활동에서 위법·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체토록 함

□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절차 개선(제22조)

- 자체감사 면책신청기간 확대 등 면책제도 운영 절차 개선
 - 면책신청기간을 감사종료 후 ‘8일 이내’에서 ‘감사결과가 통보되기 전’으로 신청기간 확대 등

□ 사전컨설팅 제도(제23조~제27조)

-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
 -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심사 결과,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공직자의 감사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신청주체·대상, 처리절차, 면책효력 등 구체적인 운영체계 마련
 - 사전컨설팅 주체 :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
 - 사전컨설팅 대상 :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, ① 인가·허가·승인 등 규제관련 업무, ② 규제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업무, ③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
 - 사전컨설팅 심사 기준 : ①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비위가 없을 것, ② 법령상의 의무 이행,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,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·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

□ 금융위원회 감사대상기관 정비

-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활동에 적용되고 있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(2010.7월 시행)을 목적조항에 명시(제1조)
-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(2016.9월)에 따라 ‘서민금융진흥원(舊 휴면예금관리재단)’ 및 ‘신용회복위원회’를 감사대상기관에 포함(제3조)
- 「여성전문금융업법」 개정(2016.9월 시행) 및 「기술보증기금법」 개정(2017.7월 시행)으로 ‘여성전문금융협회’ (→ 금융감독원) 및 ‘기술보증기금’(→ 중소벤처기업부)에 대한 검사권이 이전됨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서 삭제(제3조)

다. 금융투자업규정 (2019/10/8, 2019/10/10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최소 투자금액이 폐지됨에 따라,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최소 투자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금융투자업규정도 함께 개정하기 위함
 -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경우 최소 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 참여하기 곤란
- 신탁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,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금액 폐지(제4-51조의2)
 - (기존)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중 하나로 500만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
 - (개정)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에서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였던 금액 규정을 삭제
-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(제4-93조 제27호)
 - (기존) 증권사 신탁계좌의 경우, 신탁보수(신탁재산에 비례하여 수취)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가 금지
 - 증권사의 경우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매회전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수수료의 수취를 제한
 - 그러나,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 없이 위탁매매비용을 수취하기 곤란
 -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를 제한은 유사한 분야 또는 기능과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규제의 도입취지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
 - 증권사 일임계좌(랩어카운트)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규정 존재
 -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매매지시를 할 경우 일임수수료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내 수취 가능
 - (개정)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 지시 횟수가 신탁계약시 신탁업자와 투자자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 비용은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수취 허용

-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, 신탁재산 운용과정에서의 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폐지 또는 연장(부칙 제 2조)
 - (기존)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,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2019년 10월 23일 일몰(2013년에 4년간 한시 도입, 2017년에 2년 연장)
 -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
 -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재산, 신탁재산에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제한

[투자일임재산, 신탁재산 편입비율]

(지분증권) 개별 일임·신탁재산 총액의 50% 까지

(기타 증권) 전체 일임·신탁업자 재산에서 계열사 전체가 일임·신탁업자에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

※ 펀드의 경우에는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비율 제한을 상시규제로 운영

- (개정)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계열사 거래제한 규정의 일몰을 해제하여 상시화하거나 3년을 추가로 연장
 -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회사의 회사채 등의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편입을 제한하고,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의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하도록 제한하는 등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상시화
 -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회사의 회사채 등의 신탁재산 편입을 제한하고,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신탁 재산의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하도록 제한하는 등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(2022년 10월 23일까지)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